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115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해운대로 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가 2021. 10. 11. F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유심칩을 제공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G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유심칩을 제공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A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2010. 10. 11. 3,000만 원의 대출을, 2021. 10. 17. 360만 원의 대출을 각 받았고(위 각 대출에 관한 대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각 대출금이 위 G 계좌로 입금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돈을 다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피고의 권한 없는 대리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으로 인한 대출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으면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해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대출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